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48

발의연월일: 2022. 8. 2.

발 의 자:류성걸·안병길·주호영

이주환 • 박정하 • 조명희

조은희 · 강기윤 · 정운천

홍석준・김용판・金炳旭

강대식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 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농간 소 득격차 심화,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 려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 가.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조의3제1항).
-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 다.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 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저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 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 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 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하지 아니한다.

- 1. ~ 4. (생 략)
- ② ~ ⑦ (생 략)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

세8조의	3(상신	행협력을	는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H)
	- <u>2025</u>	5년 12·	월 31일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 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 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 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

 <u>2025년</u>	12월	31일

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 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 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 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 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 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u>202</u>
<u></u> 5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u> <u>12월 31일</u>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 2. <u>2024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 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
② 2027년 1월 1일